

참 가 신 청 서

1. 참가업체 정보

사업자명	(국문)	(영문)	
대표자	(국문)	홈페이지	
주소	(우: -)		
담당자	(국문)	(영문)	부서/직위
전화			팩 스
E-mail (구분기입)	(담당자 이메일)		핸드폰
	(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출품분야 (복수응답가능)	2018 K-웰니스 잼버리캠핑전		
	<input type="checkbox"/> 캠핑카 <input type="checkbox"/> 카라반 <input type="checkbox"/> 텐트 <input type="checkbox"/> 트레일러	<input type="checkbox"/> 캠핑패키지여행 <input type="checkbox"/> 캠핑장 <input type="checkbox"/> 레저용품 <input type="checkbox"/> 아웃도어의류	<input type="checkbox"/> 감성캠핑 <input type="checkbox"/> 바비큐용품 <input type="checkbox"/> 조리도구 <input type="checkbox"/> 침구
전시품목	1.	2.	3. 4.

2. 부스신청 및 계약

■ 해당 항목에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형태	단가 (VAT별도)	신청규모	금 액
참가비 (A)	<input type="checkbox"/> 독립부스	700,000원	부스	원
	<input type="checkbox"/> 조립부스	900,000원	부스	원
	<input type="checkbox"/> 프리미엄부스	1,200,000원	부스	원
구분	형태	할인액 (VAT별도)	신청규모	금 액
할인 (B)	<input type="checkbox"/> 1차 조기신청 할인 (2018.04.30까지)	20%	부스	원
	<input type="checkbox"/> 2차 조기신청 할인 (2018.05.30까지)	10%	부스	원
	<input type="checkbox"/> 재참가 할인('K-웰니스' 시리즈 전시회)-중복가능	10%	부스	원
공급가액 소계(A - B)				원
부가세(10%)				원
합 계				원

※ 계약금(참가비의 50%)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입금, 잔금은 2018년 5월 30일(월)까지 납부

※ 단, 할인 참가기업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전액' 입금

참가비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003-230372 (예금주 : 주식회사마이스프로모션)

당사는 이면에 수록된 참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 2018 K-웰니스 잼버리캠핑전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kw@micepm.co.kr

2018 년 월 일
참가업체 대표 : 인
(代 전시참가 책임자)

전시회 참가규정

●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단체 및 지자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18 K-웰니스 잼버리캠핑전"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마이스프로모션을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3조 부스위치 배정

1. 주최자는 전시품 성격, 참가 규모, 참가비 납입 순서, 신청 순서의 배정원칙으로 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흐름,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업체에게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참가업체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4조 전시실 관리

1. 참가업체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 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참가업체는 타 참가업체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중지를 명 할 수 있다.
6.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 할 수 있다.
7. 참가업체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의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5조 납입 조건

1. 참가업체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은 2018. 5. 30까지 완납 하여야 한다.
2. 단, **할인 참가기업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전액 완납** 하여야 한다.
3. 참가업체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업체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6조 해약

1. 참가업체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참가업체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 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참가업체"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 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가) 2018. 5. 30 까지 취소 : 참가비 총액의 20%(부가세 별도)를 위약금으로 납부

나) 2018. 6. 30 이후 취소 : 참가비 총액의 50%(부가세 별도)를 위약금으로 납부

나) 2018. 7. 30 이후 취소 : 참가비 총액의 70%(부가세 별도)를 위약금으로 납부

3.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경비로 일절 이월되지 않는다.

●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업체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업체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참가업체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참가업체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 할 수 없다.
2. 참가업체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 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 전시장 경비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참가업체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업체는 전시기간 및 전시품 반입, 설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과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참가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업체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업체에게 화재방지과 관련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업체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3. 참가업체는 전시회 참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업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018 년 월 일

참가업체 대표 : ①
(대 전시참가 책임자)